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

서울시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제9조)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고객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안 제10조에서 제16조)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7조에서 제20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